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금란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234

발 의 년 월 일 : 2025년 10월 20일
발 의 자 : 오금란, 강석주, 김성준, 김원태, 민병주, 박수빈, 박승진, 박춘선, 박칠성, 서상열, 송도호, 송재혁, 신복자, 왕정순, 유만희, 유정희, 이민옥,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정준호, 최재란, 홍국표 의원(24명)

1. 제안이유

○ 수어통역센터는 청각 · 언어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정보제공, 문화 · 정서 · 심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복합적 복지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음.

○ 또한,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어번역 등 디지털 기반 기술 및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면서, 관련 연구개발과 인프라 확충 등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고도화를 위한 법적 · 정책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현행 조례는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적 · 포괄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청각 · 언어장애인의 다양화된 욕구와 급변하는 디지털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현장의 수요와 기술 발전에 따른 기능 및 역할 변화를 반영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수어통역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각 · 언어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수행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센터 운영 일반원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센터의 이용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센터의 사업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한국수화언어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어를 말한다.
3. “수어통역사”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하여 수어를 음성언어로,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번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인공지능 수어번역”이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수어번역 기술·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운영 일반원칙) ①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권 실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 기반 시설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의 권리·욕구·연령·기술격차 등을 반영한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언어장애인
2. 청각·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3. 그 밖에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제5조(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각·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도 및 복지지원
2. 공공·의료·법률·교육기관 및 재난현장 등 수어통역이 필요한 경우 출장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3. 인공지능 수어번역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및 관련 기반 조성
4. 청각·언어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 수어 교육 및 권익옹호 교육
5.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커뮤니티 쉼터 운영 등 문화·심리·정서적 지원
6. 수어통역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청각·언어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위원회) ① 각 센터에는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계획, 서비스 품질관리 및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권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5조(사업내용)	△	**〔추계 곤란〕** 인공지능 수어번역 등 정보통신기술 활용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사업 등에 대한 지원 비용이 발생하나 정책적으로 구체화된 바 없는 현재로선 **객관적 추계가 곤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5조(사업내용)의 인공지능 수어번역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사업 등에 대한 지원비용 서울시 관련부서(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결과 해당 사업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검토가 진행되지 않아 **객관적 추정이 곤란함**

〔참고〕 추계 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

○ **(도입규모 결정 필요)** 인공지능 수어번역 **활용분야**[1]에 따라 도입규모가 달라지므로 정책적 판단 전제 필요

- 추계를 위한 자료조사 결과 현재 활용분야에 대한 관점 **차이**[2]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인공지능 수어번역 서비스 도입규모에 대한 집행기관의 결정이 전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유사사례(키오스크, 누리집 등) 등을 준용한 **합리적 추계 또한 곤란**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1) **[서비스 도입규모별 비용차이 상당]** 키오스크나 누리집 내 시스템 안내와 같은 일부 분야에 국한된 서비스와 일상생활 전반위에 대한 서비스의 도입비용 차이는 매우 크므로 활용분야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소요비용 추정이 가능할 것임

2) **[수어특성을 고려한 도입신중성 고려]** 수어는 언어의 일환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적 복잡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번역의 정확성 확보가 핵심요소이므로 해당 서비스 도입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에 도입규모에 대한 관점차이(재정투입 적정성 및 효율성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 종합적 고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